

## 서울회생법원 및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간 양해각서

서울회생법원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(이하 통틀어 "법원들"이라고 한다)은 모두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 위원회(UNCITRAL)의 모델법에 기초한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들로서, 국제도산 절차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서의 법원들 간의 관계, 국제도산 사건에서의 공고한 협력 증진의 가치를 상호 인식하고,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[목적]

이 협약은 법원들 간 공조를 장려함으로써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 및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### 제2조 [기본원칙]

법원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 협약의 이행에 협력한다. 법원들은 이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### 제3조 [협력 사항]

제1조에서 말하는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.

1. 병행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
2.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
3.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
4.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

#### 제4조 [효력]

이 협약은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. 이 협약은 조약이나 법령을 구성하지 않고 각 법원의 소속 법관들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으며 현재 내지 앞으로의 법령이나, 법원들의 결정 및 내부규정을 대체하지도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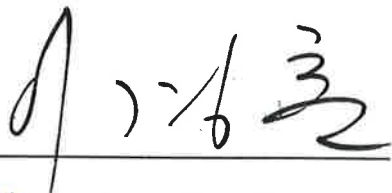
#### 제5조 [효력발생 및 유효기간]

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, 그 효력은 어느 법원이 다른 법원에게 서면으로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유지된다.

#### 제6조 [개정]

법원들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는 2018 년 4 월 23 일, 뉴욕 시각으로는 2018 년 4 월 22 일,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, 두 언어로 각 2 통씩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. 서명한 협약서는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, 각 법원이 각 언어별로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

이 경 춘  
서울회생법원  
법 원 장



세실리아 모리스  
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 
법 원 장